

인사보상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SK 스퀘어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회 산하 인사보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인사보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구성 및 위원 선임)

- ① 인사보상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한다.
- ② 인사보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 ③ 인사보상위원회는 제반 업무를 처리케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이사회 업무의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제 4 조 (위원장)

- ① 인사보상위원회는 위원의 호선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둔다.
-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호선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제 5 조 (권한)

- ① 인사보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표이사 연임 여부
 2. 대표이사 선임 제안 및 후보 추천
 3. 대표이사·사내이사의 이사 개인별 보수액에 대한 적정성
- ② 제1항에 따라 인사보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소집)

- ① 인사보상위원회는 개최의 필요성이 있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인사보상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규정 제7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 (대표이사 후보군 관리)

- ① 회사는 대표이사 승계계획을 수립하고, 인사보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인사보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인사보상위원회는 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승계계획 내의 대표이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그 적정성을 검증한다.

제8조 (대표이사 연임 및 신규 대표이사 선임 제안 등)

- ① 인사보상위원회는 대표이사의 연임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사에 통보한다.
- ② 인사보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를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본 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 신규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에 제안한다.
- ③ 인사보상위원회가 신규 대표이사의 선임을 제안하는 경우 제7조의 대표이사 승계계획 내의 대표이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검토 및 평가 절차를 거쳐 이사회에 최종 대표이사 후보를 제안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신규 대표이사의 선임을 제안하는 경우 위원장은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 청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접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9조 (대표이사·사내이사 보수)

- ① 회사는 대표이사·사내이사에 대한 보수액을 정해 인사보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② 인사보상위원회는 매년 회사로부터 보고받은 대표이사·사내이사에 대한 보수액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안한다.

제 10 조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 (의사록)

- ① 인사보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